

\$ 1.3 billion 손해배상을 명한 Oracle v. SAP 사건

박성민¹⁾

I. 서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시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용이하게 하는 조항으로 침해자에 대해 저작권 등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 등²⁾을 두고 있고 법원이 그것을 활용하기도 한다³⁾. 그러나 여전히 실무에서는 저작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곤란을 경험할 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 23일 미국 California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원이 넘는 금액(\$ 1.3. billion)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데 이는 배심원들이 판단한 금액으로 실손해액(actual damages)이었다. 만약 침해를 하지 않고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법리적으로 눈에 띄는 쟁점이 보이지는 않으나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그것도 실손해액(actual damage)으로 판단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려 한다.

II. Oracle v. SAP 사건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2)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125조 제1항에서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 등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26조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등

1. SAP가 Oracle의 소프트웨어 등을 도용함

SAP는 독일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Database 등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미국 회사인 Oracle의 경쟁자이다. Oracle은 SAP가 조직적으로 Oracle의 고객 지원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Oracle에게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도용했음을 알게 되었다. SAP는 Oracle에게서 훔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서 Oracl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이 고객이 되도록 한 것이었다. 자세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Oracle의 고객 지원 웹사이트는 Oracle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license)을 받은 고객들을 지원하는 사이트인데 Oracle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통해 만든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였다. 이용 허락을 받은 고객은 자신이 이용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다운로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06년 11월 Oracle의 고객 지원 웹사이트에서 이상하리만큼 많은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용 허락을 받은 고객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것과는 그 양상이 달랐다고 한다. SAP의 종업원들이 Oracle의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Oracle 고객들의 로그인 인증서를 사용해서 짧은 기간 동안 수천 개의 소프트웨어와 지원 자료들을 복제해 간 것이었다. Oracle의 주장에 따르면 SAP는 Oracle 고객의 인증서를 이용해서 4일 동안 연속으로 하루 평균 1800개의 아이템을 다운로드해갔다고 하며 보통의 Oracle 고객이 한 달에 평균 20개를 다운로드 받는 것에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이라 한다.

Oracle의 주장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일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에 걸쳐서 여러 번 있었고 수 백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만 건 이상의 불법적인 다운로드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다운로드는 실제 고객들의 IP 주소가 아닌 Texas의 Bryan에 있는 IP 주소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 SAP America의 지사와 SAP America의 100% 자회사인 SAP

TN(TomorrowNow)이 있었고 Oracle의 서버 로그에는 SAP IP 주소가 남아 있었음이 밝혀졌다.

2. 소송의 경과

Oracle은 2007년 1월 SAP를 상대로 자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그렇게 얻은 저작물 등을 이용해서 Oracle의 고객들을 빼앗아가고자 한 것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⁴⁾.

이에 대해 SAP는 2007년 7월, 자신의 100% 자회사인 SAP TN이 Oracle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시인했고⁵⁾ 2010년 11월에는 SAP의 CEO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SAP는 손해배상액으로 \$40 million를 상한으로 주장하였으나 Oracle은 적어도 \$1.65 billion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Division)은 2010년 8월 17일 SAP의 저작권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등을 인정하였으며 2010년 11월 배심원들의 판단에 따라 실손해액(actual damages)으로 \$1.3 billion을 명하였다.

3. 지방법원 판단에 대한 Oracle과 SAP의 태도

Oracle 측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⁶⁾ SAP는 불만이다. SAP TN이 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커서 유감이며 앞으로 가능한

4) <http://graphics8.nytimes.com/packages/pdf/business/20070323oracle.pdf>
<http://www.oracle.com/sapsuit/amended-complaint.pdf>

5) http://blog.ericgoldman.org/archives/2007/07/sap_has_bad_new.htm

6) <http://www.physorg.com/news/2010-11-jury-sap-oracle-billion-dollars.html>

법적 수단을 활용해서 대응할 것이고⁷⁾ Oracle과 손해액에 대해 협상할 마음도 있다고 한다⁸⁾.

III. 정리

우리나라 판례는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 등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며, 이 때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한다.⁹⁾

이 사건에서 미국 지방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한 방식도 위의 우리나라 판례와 유사한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Oracle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 또는 이용 허락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있어서 위에서 나온 우리나라 판례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해본다. 하지만 필자가 구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을 명하는 한 장짜리 판결 결과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 산정 방식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7) <http://www.sap.com/press.epx?PressID=14432>

8) <http://www.physorg.com/news/2010-11-jury-sap-oracle-billion-dollars.html>

9) 대법원 2010.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등 참조.